

1. 개정이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 제17282호, 2020. 5. 19. 공포, 2020. 11. 20. 시행) 으로 성매매 대상아동·청소년을 ‘피해자’로 규정하고 이들에게 선고되던 보호처분 및 수강명령 등을 폐지하게 됨에 따라 시행규칙에서 관련 내용을 규정하던 사안을 삭제하고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하위법령을 신설하는 한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 제17338호, 2020. 6. 2. 공포·시행) 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판매·알선 등의 범죄 신고 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시행규칙에서 포상금 지급 금액을 규정하고자 함. 또한 신상정보 고지의 방식을 기존 우편 고지에서 모바일 방식으로 병행·전환하는 사업 방식 변경에 따라 시행규칙에 관련 사안을 규정·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성매매 대상아동·청소년’ 교육 이수명령 등 관련 사안을 삭제하고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발견 사실의 통지에 관한 사안 및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안을 규정함. (안 제3조 및 제4조 개정, 제5조 삭제, 별지 제2호 개정, 별지 제2호의2서식 신설)
- 나. 신상정보 고지의 방식을 기존 우편 고지에서 모바일 방식으로 병행·전환하는 사업 방식 변경에 따라 관련 사안을 신설하며, 법 제51조의2에 따른 고지정보의 정정 사항을 송부 현황 관리대장에 반영할

수 있도록 별지 서식을 개정함. (안 제7조, 별지 제8호서식 개정)

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법 제11조) 신고에 따른 포상금의 세부 지급액을 규정함. (안 제10조 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법무부·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0. . . ~ . .)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발견 사실의 통지)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피해아동·청소년 발견사실의 통지는 별지 제2호 및 제2호의2서식에 따른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 운영 등)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47조의2제4항에 따라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의 운영을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또는 아동·청소년 보호를 주된 업무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한다. 다만, 이 경우 해당 사실을 관보 또는 공보나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를 삭제한다.

제6조 중 “영 제20조제2항”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제2항”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2. 이동통신단말장치 등을 통한 전자 고지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제1호”를 “제1항제1호 및 제2호”로, “우편송부를”을 “우편송부 및 이동통신단말장치 등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제1호”를 “제1항제1호 및 제2호”로, “우편으로 송부”를 “송부”로, “우편송부”를 “송부”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필요한”을 “다음 각 호의”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주민등록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2. 성명, 주소 등 그 밖에 고지명령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제10조제2호 중 “제14조”를 “제11조제1항·제2항·제4항, 제14조”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여성가족부장관, 시·도지사”로 하고, 같은 서식 중 “대상아동·청소년”을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으로 하고, 같은 서식 중 “제3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을 “제38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서식 중 “대상아동·청소년”을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으로 하고, 같은 서식 중 “대상아동·청소년”을 “피해아동·청소년”으로 한다.

별지 제2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8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부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20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호의2서식] <신설>

○ ○ 지방검찰청 ○ ○ 지청

제 호

년 월 일

수 신 여성가족부장관, 시·도지사

제 목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발견 사실 통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통지합니다.

성매매 피해아동 · 청소년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학 교	학교	학년	반

보호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관 계	
	비고	※ 피해아동·청소년의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사실상 그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사람의 인적사항 등을 적습니다.		

실제 연 락 가능 한 사람	성 명		관 계	
	주 소		전화번호	

담당자	성 명		소 속	
	전화번호		계 급	

○ ○ 지방검찰청 ○ ○ 지청장

직인

고지정보 송부 현황 관리대장

(1) 고지번호 (고지연도 - 일련번호)	(2) 고지일자	(3) 고지사유	고지대상자			(5) 고지지역	(6) 고지정보 수령대상 세대 판단기준일	(7) 고지정보 수령대상 세대수	비고	
			성명	생년월일	(4) 고지대상 주소정보 (주민등록상주소는 외국인인 경우 국내 체류지, 외국국적동포인 경우 국내거소)					
					주소구분					주소내역
(예시) 2011- 0001	0000년 00월 00일	[]신규등록 []변경등록 []정정등록			[]주민등록상주소	0000도 00시 000 동 000 번지	-	-	-	
		[]실제거주지			XXXX도 XX시 XXX 동 XXX 번지	XXXX도 XX시 XXX동				
(예시) 2011- 0002	0000년 00월 00일	[]신규등록 []변경등록 []정정등록			[]주민등록상주소	0000도 00시 000 동 000 번지	-	-	-	
		[]실제거주지			0000도 00시 000 동 000 번지	XXXX도 XX시 XXX동				
		[]신규등록 []변경등록 []정정등록			[]주민등록상주소					
		[]신규등록 []변경등록 []정정등록			[]실제거주지					
		[]신규등록 []변경등록 []정정등록			[]주민등록상주소					
		[]신규등록 []변경등록 []정정등록			[]실제거주지					

<작성요령>

(1) 고지번호는 고지되는 연도와 연도별 고지일련번호를 부여한다.

(2) 고지일자는 고지정보서가 생성된 날짜로 한다.

(3) 고지사유와 (4)고지대상 주소정보의 주소구분은 해당되는 사항의 []안에 √표시한다.

(5) 고지지역은 고지대상자 실제거주지의 행정구역명으로 한다.

(6) 고지정보 수령대상 세대 판단기준일은 (2)고지일자의 전일로 한다.

(7) 고지정보 수령대상 세대·기관 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4항에 따른 고지명령 집행 건수를 기재한다.

(8) (7)의 고지집행 수단(우편 또는 전자)을 기재하되, 최종 집행된 수단으로 한다.

297mm×210mm[백상지 70g/㎡(재활용품)]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대상아동·청소년 발견 사실의 통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른 대상아동·청소년 발견사실의 통보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3조(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발견 사실의 통지)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피해아동·청소년 발견사실의 통지는 별지 제2호 및 제2호의2서식에 따른다.
제4조(교육과정 등 이수명령 통보)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대상아동·청소년의 교육과정이나 상담과정(이하 “교육과정등”이라 한다) 이수명령 통보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4조(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 운영 등)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47조의2제4항에 따라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의 운영을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또는 아동·청소년 보호를 주된 업무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한다. 다만, 이 경우 해당 사실을 관보 또는 공보나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교육과정등의 이수통보) ①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대상아동·청소년의 교육과정등 이수결과 통보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삭 제>

②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가해
아동·청소년의 교육과정등 이
수결과 통보는 별지 제5호서식
에 따른다.

제6조(공개정보 원부의 작성) 영
제20조제2항에 따른 성범죄자
공개정보 원부는 별지 제6호서
식에 따르되, 컴퓨터단말기에
의하여 열람이 가능한 형태의
컴퓨터 파일자료로 작성·관리
하여야 한다.

제7조(고지명령의 집행) ① 법 제
51조에 따른 고지명령의 집행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생략)

<신설>

2. (생략)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우편송부
를 통한 고지는 별지 제7호서식
에 따른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제1
호에 따라 고지정보를 우편으로

제6조(공개정보 원부의 작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
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
라 한다) 제20조제2항에 따른
성범죄자 공개정보 원부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르되, 컴퓨터단
말기에 의하여 열람이 가능한
형태의 컴퓨터 파일자료로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고지명령의 집행) ① -----
-----.

1. (현행과 같음)

2. 이동통신단말장치 등을 통한
전자 고지

3. (현행 제2호와 같음)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
----- 우편송부
및 이동통신단말장치 등을 ---
-----.

③ ----- 제1항제1호
및 제2호----- 송부----

송부한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고지정보 우편송부 현황 관리대장(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그 내용을 적어 관리하여야 한다.

④ (생략)

⑤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51조에 따른 고지명령의 집행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신설>

제10조(포상금의 지급액 등) 영 제31조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세부적인 지급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 (생략)

2. 법 제8조, 제8조의2, 제14조 및 제15조의 범죄: 100만원

----- 송부 -----

--.

④ (현행과 같음)

⑤ -----

----- 다음 각
호의-----.

-----.

1. 「주민등록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2. 성명, 주소 등 그 밖에 고지명령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제10조(포상금의 지급액 등) ----

-----.

1. (현행과 같음)

2. ----- 제11조제
1항·제2항·제4항, 제14조 -

< 의안 소관 부서명 >

아동청소년성보호과	
연 락 처	02-2100-6405